

결 정

2018 - 1007 신문윤리강령 위반
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

주 문

경향신문 2017년 12월 1일자 15면 「인종청소 재판 중/희대의 ‘독약 자살’/인생 유전 드라마」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1. 경향신문은 위 적시 사진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.



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서 보스니아 전쟁 당시 전범 혐의로 재판 받을 슬로보단 프랄락 전 크로아티아군 사령관이 29일(현지시간) 판결을 거부하며 병에 든 독을 마시고 있다.

헤이그 | EPA연합뉴스

경향신문의 위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(현지시간)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유고전범재판소(ICTY)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전 크로아티아군 사령관 슬로보

단 프랄락(72)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이에 항의하며 병에 든 독약을 꺼내 들이키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.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.

외신 사진이라 하더라도 독극물을 들이마시며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을 쓴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.

이러한 보도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④(선정보도의 금지), 제7조 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 ④(자살보도의 신중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 용 담
위원	정 송 호	정 송 호
	장 명 국	장 명 국
	이 동 현	이 동 현
	장 인 철	장 인 철
	강 희	강 희
	김 영 모	김 영 모
	박 현 갑	박 현 갑
	박 미 경	박 미 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④(선정보도의 금지) 기사는 성범죄,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.

제7조 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 ④(자살보도의 신중)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.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. 특히 표제에는 ‘자살’이라는 표현을 삼간다.